##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2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양경숙·김상희·송영길

김민석 · 황운하 · 김경만

이해식 · 김남국 · 신정훈

이형석 · 앙이원영 · 홍영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 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 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 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8 및 제55조).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8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요청 등에"를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요청과 제공 등에"로 한다.

- ③ 체육단체의 장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체육단체는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와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체육단체는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게재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 ①·② (생 략)	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체육단체의 장은 소속된 선			
	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			
	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체육단체는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체육지도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요			
	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체육단체			
	는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			
	자 채용에 활용하여야 한다.			
്റെ പി1ടിപി നില റിചിവിവി വ	_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	<u> </u>			
템의 구축・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u>요청 등에</u>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제55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u> ~ <u>3.</u> (생 략)

④ (생 략)

			<u>3</u>	<u> 1성</u>	<u>,</u> 제
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
항에	따른	정보	요청기	라.	제공
<u>등에</u> -					

제5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3) -----
- 1. 제18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 2.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